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61 호 2016. 6. 15(수)

고 시

제2016	-	34호	도로명주소 고시	1
제2016	-	4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준공확인 사항 고시	4
제2016	-	44호	북남치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2단계) 고시	5
제2016	-	45호	적조방제용 형망선 신청안내 고시	8
제2016	-	46호	적조대비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지정고시	11
제2016	-	49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	13

공 고

제2016	-	442호	양식어업면허 처분 및 포기사항 공고	18
제2016	-	452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19
제2016	-	453호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4
제2016	-	461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30
제2016	-	465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34
제2016	-	470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0
제2016	-	473호	2016년 남해군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관리·운영 위수탁 현황 공고 ..	48

알 림

미조면 공고	제2016	-	5호	미조면 소재 불법쓰레기 단속용 CCTV설치 행정예고 ..	49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6	-	14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52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6, 행정 3046)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6 - 3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321 외 1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밭리 815-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021	20090427	창선면의 사적해인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고힌면 도마리 889-1	경상남도 남해군 고힌면 남해대로3213번길 40-26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481-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로 190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섬의 모양이 밤같이 생긴 데에서 유래
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47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246번길 92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370-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삼리로 92	20090427	동쪽의 두, 세번째 행정구역이라는 뜻으로 지어 부른 방위지명이 이남면과 삼동면을 연결하는 도로임
6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84-52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318번길 8-3	20090427	미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107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703-7	20090427	창선면의 사적해인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8	경상남도 남해군 고힌면 오곡리 866	경상남도 남해군 고힌면 고설로83번길 143-55	20090427	고설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230-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02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10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912-1, 912-9, 912-10, 1000, 912-17, 912-20, 912-13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승로393번길 136	20091023	미승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석교리 330-20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202번길 50-14	20090427	남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안현리 1195, 1204-3, 1204-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811-90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13	경상남도 남해군 삼주면 상주리 1036	경상남도 남해군 삼주면 남해대로 725-5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1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9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591-7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1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79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717-11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16	경상남도 남해군 칠천면 비리리 211-2	경상남도 남해군 칠천면 고설로288번길 25-1	20100915	고설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67-12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17-10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남해군 고시 제2016 - 4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준공확인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준공확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일

남 해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준공확인증 교부 현황

협의 (허가) 번호	협의 (허가) 일자	준공일자	점용·사용의 목적	점용·사용의 장소	점용·사용 의 면적 ㎡	점용·사용 기 간	점용·사용 준공확인을 받은 자	
							주 소	성 명
2015-11	2015. 8.5	2016.4 .24	인공구조물 (가인리 화석산지 진입로)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153번 지선	266	2015.8.5.- 2045.8.4. (30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수 (문화관광과장)

남해군 고시 제2016 - 44호

북남치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2단계)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북남치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2단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남 해 군 수

사업의 명칭 : 북남치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사업의 목적 : 농산어촌지역의 어메니티 증진과 계획적인 개발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3. 사 업 비 : 4,300백만원(국비 : 3,010백만원, 지방비 : 1,290백만원)

- 1단계 : 1,479백만원(기시행), 2단계 : 2,821백만원(금회)

4. 주요사업내용

-1단계(기시행)

- 기초생활 기반확충 : 마을안길정비, 옛동쉼터
- 지역경관개선 : 옛동수변경관정비 1단계
- 지역역량강화사업 : 교육, 컨설팅, 정보화 외

-2단계(금회시행)

- 기초생활 기반확충 : 옛동권역활성화센터, 옛동주민나눔마당, 북남치마을 주차장 조성
- 지역경관개선 : 옛동마을숲, 옛동탐방로, 옛동수변경관정비 2단계, 종합안내판

5. 사업시행자 : 남해군(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위탁시행)

6.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7. 시행계획 열람 장소 : 시행계획서는 남해군 미래전략사업단(055-860-36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북남치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요약)

1. 현 황

위 치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오편리, 남치리 일원 (법정리 3개, 행정리 4개)
면 적	541ha (농경지 166.8ha, 임야 374.2ha)
가구 · 인구	266호(농가 176호, 비농가 90호), 인구 464명
지 역 자 원	권역내 : 대국산성, 고려대장경판각지, 남치저수지 등 권역외 : 금산, 설흘산, 상주은모래비취, 남해대교, 충렬사, 지족원시어업 죽방렴, 원예예술촌, 가천다랭이 등

2. 세부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기초생활 기반확충	옛동권역활성화센터	조성면적 : 2,321m ² 건축면적 : 270.9m ²	
	마을안길정비	아스콘포장 : 3,953m ² 우수박스 : 714m	기시행
	옛동쉼터	조성면적 : 256m ² 파고라, 쉼터, 부대시설	기시행
	북남치마을 주차장조성	조성면적 : 818m ² 주차장, 파고라	
	옛동주민나눔마당	조성면적 : 1,542m ² 마을안길정비, 주차장 등	
지역경관개선	옛동마을숲	조성면적 : 1,948m ² 주민쉼터마당, 화장실, 부대시설	
	옛동탐방로	탐방로 조성 : 7,375m (신설:4,175m, 정비:3,200m)	
	옛동수변경관정비	데크로드 : 334m 포토존, 비가림시설, 좌대 등	1차 기시행
	권역종합안내판	종합안내간판 : 1식	
지역역량강화	지역역량강화	지역역량강화 : 1식	

3. 사업비 및 사업기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3까지	'14	'15	'16	비고
국 비	3,010	411	736	354	1,509	
지방비	도 비	387	53	95	46	194
	군 비	903	123	220	106	453
총 사업비	4,300	587	1,051	506	2,156	

4. 공종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공사비	비고
옛 동 권 역 활 성 화 센 터	1,195,092	
옛 동 주 민 나 눔 마 당	386,597	
옛 동 마 을 숲	508,099	
옛 동 탐 방 로	93,060	
옛 동 수 변 경 관 정 비 2 단 계	159,840	
종 합 안 내 판	59,310	관급설치
북 남 치 마 을 주 차 장 조 성	140,380	
순 공 사 비	2,542,378	
도 급 예 정 액	1,454,520	토 목 건 축
관 급 자 재 대	717,420	
폐 기 물 처 리 비	11,870	
총 공 사 비	2,183,810	
기타(전기소방통신 및 공감관리 외)	630,452	
예 비 비	6,751	
총 사 업 비	2,821,013	

남해군 고시 제2016 - 45호

적조방제용 형망선 신청안내 고시

『2016년 적조피해최소화를 위한 적조방제용 형망선 신청안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남 해 군 수

붙 임 2016년 적조방제용 형망선 신청 공고문 1부

적조방제용 형망선 신청안내 공고문

■ 사업비 및 물량

- 사업비 : 130,000,000원(국비100%)
- 사업물량 : 35척
- ※ 사업물량은 신청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장소

- 2016. 6. 10 ~ 6. 20(11일간)
- 해양수산과 해양보전팀(☎ 860-3378)

■ 자격조건

- 7톤 이상 선박으로 양식어장 및 관리선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선박
 - 단, 7톤이하의 선박이라도 적조방제 실적이 있거나, 방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선박은 금액을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 2인치 이상의 양수기(동키)를 설치한 선박
- 무전기 및 GPS 등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
- 적조방제 민간참여자 방제 기법 교육 이수자(선주 및 선원)
- 기타사항
 - 선박의 기관을 최근에 설치하였거나, 어선검사를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선박
 - 선체의 파손이 없고, 상태가 양호한 선박
 - 최근에 적조방제작업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선박

■ 신청서류

- 선박서류 일체(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관리선지정증)
- 보험가입 영수증
- 인감증명 1통
- 적조방제 기술 교육 이수증 1부
- 계약서 1부(해양보전팀 비치)
- 본인 선박이 아닌 경우 임차계약서 및 선박사용 동의서 1부.
- 기타 무전기 및 GPS 등 항해장비 설치확인 자료

적조방제 선박 작업 일대

- 7톤~10톤급 : 500,000원
- 7톤이하 선박 : 450,000원

척수의 제한

- 적조방제 선박의 가능 척수는 35척 규모로 한다.
- 다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자격을 검토하여 추가 선정·심의 할 수 있다.

선박의 채점기준

점 수 구 분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톤 수	5톤이하	5~6톤	6~7톤	7~8톤	8~9톤	9톤이상
선 령	15년이상	10~15년	7~10년	5~7년	3~5년	3년이하
마 력	150마력이하	150~200	200~250	250~300	300~350	400마력이상

※ 단, 동일 점수시에는 톤수가 큰 선박, 선령이 적은선박 순서로 우선하여 선정한다.

선박의 배정

- 남면 유구 및 고현면 갈화지선 : 10척
- 미조면 미조지선 : 22척
- 소형 황토살포기 예인선박 : 3척

선박의 배정 추첨

- 소형 황토살포기 바지선을 운항할 선박은 9톤 이상의 선박을 선별하여 3척을 먼저 추첨한다.
- 자격을 갖춰 선정된 선박으로서 선주를 통해 동일한 장소에서 추첨하여 선박을 지역별 배정하여 운항토록 한다.

남해군 고시 제2016 - 46호

적조대비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지정고시

2016년 유해성 적조발생에 대비한 사전준비태세 확립과 적조피해 발생전 해상가두리시설 안전지대 이동을 통한 어업피해 최소화 도모를 위한 해상가두리시설 안전 대피장을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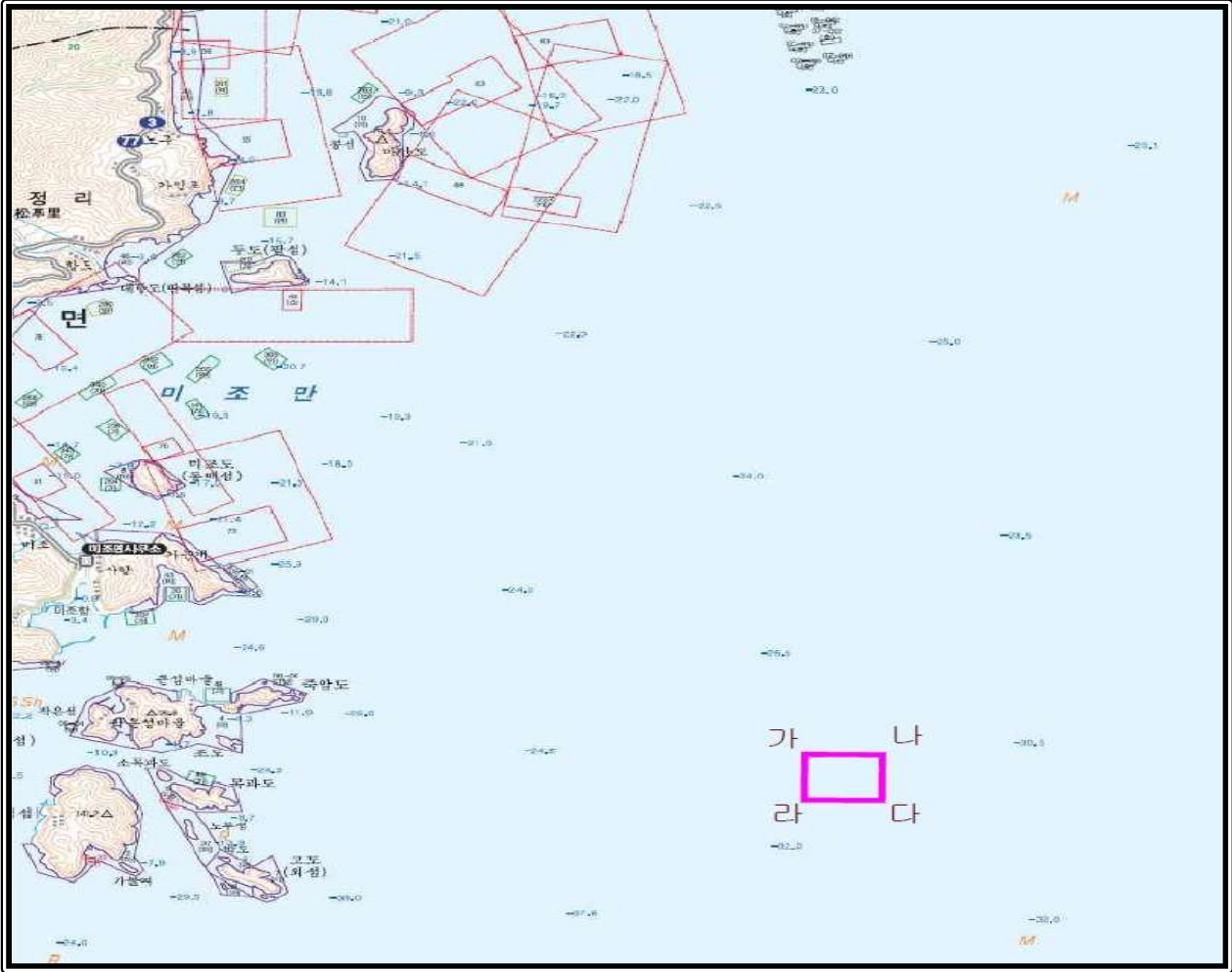
남 해 군 수

<적조대비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지정현황>

지정목적	면적 (ha)	지정기간	위치	좌표(WGS) 및 구역 (위도,경도)	지정받은자
적조발생 시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30	2016 .7 .1 2016.10.31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미조도 부근	가.34-41-37.150, 128-06-28.923 나.34-41-37.150 128-06-52.494 다.34-41-20.925 128-06-52.494 라.34-41-20.925 128-06-28.923 【가,나,다,라,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구역】	남해군수 (해양수산과장)

붙 임 : 대피장 지정 해역도 1부

(해상가두리 적조대피장 해역도)



상기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수역

구분	경위도(WGS)		기점간 거리(m)		비 고
	위도(N)	경도(E)	기점(구간)	거리(m)	
가	34-41-37.150	128-06-28.923	가-나	600	
나	34-41-37.150	128-06-52.494	나-다	500	
다	34-41-20.925	128-06-52.494	다-라	600	
라	34-41-20.925	128-06-28.923	라-가	500	

남해군 고시 제2016 - 49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

남해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남 해 군 수

I. 세입·세출결산

1. 총 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442,701,138,319	445,410,852,806	330,020,634,203	115,390,218,603
일 반 회 계	375,944,050,279	379,078,785,631	280,276,861,845	98,801,923,786
특 별 회 계	66,757,088,040	66,332,067,175	49,743,772,358	16,588,294,817
상 수 도	13,212,717,200	13,452,852,198	10,139,257,430	3,313,594,768
의 료 급 여 기 금	747,852,000	743,325,818	691,689,308	51,636,510
자 활 및 생 활 기 금	1,967,060,000	2,041,831,041	20,000,000	2,021,831,041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774,437,000	778,009,868	325,948,910	452,060,958
환 경 기 초 시 설	28,052,576,840	27,314,030,851	16,602,035,610	10,711,995,24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454,493,000	453,456,510	420,917,100	32,539,410
기 반 시 설	4,028,000	4,482,620		4,482,620
청 사 건 립	21,543,924,000	21,544,078,269	21,543,924,000	154,269

2. 세입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442,701,138,319	446,918,199,815	445,410,852,806	1,507,347,009
일 반 회 계	375,944,050,279	380,498,636,330	379,078,785,631	1,419,850,699
특 별 회 계	66,757,088,040	66,419,563,485	66,332,067,175	87,496,310
상 수 도	13,212,717,200	13,528,660,408	13,452,852,198	75,808,210
의 료 급 여 기 금	747,852,000	743,325,818	743,325,818	
자 활 및 생 활 기 정 기 활 금	1,967,060,000	2,041,831,041	2,041,831,041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774,437,000	778,009,868	778,009,868	
환 경 기 초 시 설	28,052,576,840	27,325,718,951	27,314,030,851	11,688,100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대 지 보 상	454,493,000	453,456,510	453,456,510	
기 반 시 설	4,028,000	4,482,620	4,482,620	
청 사 건 립	21,543,924,000	21,544,078,269	21,544,078,269	

3. 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442,701,138,319	330,020,634,203	84,698,816,077 (8,393,372,747)	27,981,688,039
일 반 회 계	375,944,050,279	280,276,861,845	71,208,575,057 (8,393,372,747)	24,458,613,377
특 별 회 계	66,757,088,040	49,743,772,358	13,490,241,020	3,523,074,662
상 수 도	13,212,717,200	10,139,257,430	2,774,352,040	299,107,730
의 료 급 여 기 금	747,852,000	691,689,308		56,162,692
자 활 및 생 활 기 정 기 활 금	1,967,060,000	20,000,000		1,947,060,000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774,437,000	325,948,910	130,000,000	318,488,090
환 경 기 초 시 설	28,052,576,840	16,602,035,610	10,553,349,570	897,191,660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대 지 보 상	454,493,000	420,917,100	32,539,410	1,036,490
기 반 시 설	4,028,000			4,028,000
청 사 건 립	21,543,924,000	21,543,924,000		

4.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15,390,218,603 (8,393,372,747)	29,345,678,510 (1,127,945,500)	6,249,655,118	40,710,109,702 (7,265,427,247)	2,454,652,488	36,630,122,785
일 반 회 계	98,801,923,786 (8,393,372,747)	26,710,424,600 (1,127,945,500)	5,758,621,978	30,346,155,732 (7,265,427,247)	2,372,398,702	33,614,322,774
특 별 회 계	16,588,294,817	2,635,253,910	491,033,140	10,363,953,970	82,253,786	3,015,800,011
상 수 도	3,313,594,768	838,797,270	361,033,140	1,574,521,630		539,242,728
의료급여기금	51,636,510				48,262,170	3,374,340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2,021,831,041					2,021,831,041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452,060,958		130,000,000		20,939,340	301,121,618
환경기초시설	10,711,995,241	1,763,917,230		8,789,432,340	13,052,276	145,593,39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	32,539,410	32,539,410				
기 반 시 설	4,482,620					4,482,620
청 사 건 립	154,269					154,269

II. 기금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수납액	당해연도지출액	당해연도현재액
계	12,027,974,831	843,737,807	666,416,500	12,205,296,138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107,954,337	2,157,350	1,500,000	108,611,687
중소기업육성기금	1,024,626,210	225,502,197	13,709,950	1,236,418,457
재난관리기금	866,404,213	291,110,390	286,492,550	871,022,053
사회복지기금	2,058,543,544	52,815,540	43,694,000	2,067,665,084
여성발전기금	627,329,690	116,284,370	15,000,000	728,614,060
식품진흥기금	43,019,350	9,449,400	10,000,000	42,468,750
마늘명품화기금	7,300,097,487	146,418,560	296,020,000	7,150,496,047

Ⅲ. 채권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발생액	당해연도소멸액	당해연도현재액
합 계	3,358,757,710	66,674,083	160,522,603	3,264,909,190
일 반 회 계	2,952,312,030	1,921,480		2,954,233,510
특 별 회 계	406,445,680	64,752,603	160,522,603	310,675,680
자활 및 생활 안정	201,541,760	51,073,470	129,073,470	123,541,760
발전소 주변 지역 지 원 사 업	204,903,920	13,679,133	31,449,133	187,133,920

Ⅳ. 채무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발생액	당해연도소멸액	당해연도현재액
합 계	7,597,200,000		2,614,000,000	4,983,200,000
일 반 회 계	400,000,000		100,000,000	300,000,000
특 별 회 계	7,197,200,000		2,514,000,000	4,683,200,000
상 수 도	7,197,200,000		2,514,000,000	4,683,200,000

V. 공유재산 및 물품

(단위 : 원)

구 분	공 유 재 산		정 수 물 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2,019	434,709,675,124	814	5,681,513,000
토 지	26,898	162,642,595,543	-	-
건 물	312	86,089,519,272	-	-
기 타	14,809	185,977,560,309	814	5,681,513,000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6 - 442호

양식어업면허 처분 및 포기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포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남 해 군 수

○ 양식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양식 제449호	어류등양식 (수하식)	삼동 동천	50,000	2016. 6. 7. ~2026. 6. 6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	양화금어촌계 외 3명(배○, 오○현, 박○애)	대체발

○ 어업권 포기신고 수리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양식 제267호	어류등양식 (수하식)	멍게	삼동 동천	50,000	2014.12.22 2024.12.21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	양화금어촌계 외 3명(배○, 오○현, 박○애)	대체발

남해군 공고 제2016 - 452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광천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남 해 군 수

1. 출입토지의 내용

- 공 사 명 : 광천소하천 정비공사
- 출입구간 :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974번지 외 66필지(붙임 참조)

2. 출입기간 : 2016. 06. 08 ~ 사업 종료시까지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안전총괄과장)

4.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안전총괄과 (☎055-860-32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용지조서 1부. 끝.

용 지 편 입 조 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m ²)		소 주	유 소	자 성 명	관계인(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군	면		리	지	대장	현재				총지적	편입	주소	
1	남해	창선	광천	974	답	답	721	375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서*호				지분1/2
2	남해	창선	광천	975	답	답	1,322	70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주례동)	문*희				지분1/2
3	남해	창선	광천	976	답	답	949	17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최*근				
4	남해	창선	광천	979	답	답	456	16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이*희				
5	남해	창선	광천	978	전	전	195	12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김*신				
6	남해	창선	광천	산1	임	임	1,497	130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진*숙				
7	남해	창선	광천	980	답	답	879	87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진*숙				
8	남해	창선	광천	983	답	답	1,052	59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박*욱				
9	남해	창선	광천	972	도	도	179	17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이*권				
10	남해	창선	광천	973	답	답	1,068	10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김*훈				
11	남해	창선	광천	963	답	답	588	4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박*수				
12	남해	창선	광천	959	답	답	833	11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김*모				
13	남해	창선	광천	956	답	답	274	115	인천광역시 중구 문서동	김*욱				
14	남해	창선	광천	955	답	답	56	5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이*오				
15	남해	창선	광천	954	답	답	1,064	1,06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김*일				
16	남해	창선	광천	918	답	답	926	240	경상남도 사천시 서동	이*태				
17	남해	창선	광천	917	답	답	555	18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이*권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창*새마을금고	창*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건
18	남해	창선	광천	913	답	답	1,468	171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박*철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주	성명	관계인(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군	면		리	본	지	대상			현재	총지적	편입	
19	남해	창선	광천	912	1	도	도	519	519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이*택		
20	남해	창선	광천	911	2	도	도	7	7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이*운		
21	남해	창선	광천	910	2	도	도	23	23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김*준		
22	남해	창선	광천	909	1	답	답	205	192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박*수		
23	남해	창선	광천	905	1	답	답	376	100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김*동		
24	남해	창선	광천	904	1	답	답	528	51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이*순		
25	남해	창선	광천	903	1	답	답	671	147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이*순		
26	남해	창선	광천	886	1	답	답	258	170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이*순		
27	남해	창선	광천	886	2	구	구	17	17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박*수		
28	남해	창선	광천	886	3	답	답	714	714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박*수		
29	남해	창선	광천	887		답	답	631	51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박*근		
30	남해	창선	광천	885		답	답	1,673	192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김*자	창원시 성산구 안민로	정*성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31	남해	창선	광천	877	1	답	답	1,018	70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이*덕	경상남도 사천시 각산로	근저당권 1건 지상권 1건
32	남해	창선	광천	877	2	답	답	1,028	568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이*덕	경상남도 사천시 각산로	근저당권 1건 지상권 1건
33	남해	창선	광천	875		답	답	1,150	122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김*익		
34	남해	창선	광천	874		답	답	592	379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김*익		
35	남해	창선	광천	872		답	답	456	456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김*익		
36	남해	창선	광천	855		답	답	605	605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김*익		
37	남해	창선	광천	854		답	답	1,550	7	남해군 창선면 수신리	장*현		
38	남해	창선	광천	856		답	답	625	625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591번길	이*분		
39	남해	창선	광천	852		답	답	1,557	183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박*주		
40	남해	창선	광천	857		답	답	364	25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박*수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m ²)		소 유 소		자		관계인(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군	면	리	본	지	대장	현재	총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41	남해	창선	광천	858		답	답	413	6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이*남					
42	남해	창선	광천	21		답	답	1,603	19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김*익					
43	남해	창선	광천	22		답	답	1,815	21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925번길	서*권					
44	남해	창선	광천	20		답	답	707	27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박*수					
45	남해	창선	광천	23		답	답	529	19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박*공					
46	남해	창선	광천	19		답	답	939	10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김*동					
47	남해	창선	광천	24		답	답	1,289	6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이*일					
48	남해	창선	광천	37		천	천	96	3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김*녀					
49	남해	창선	광천	39		답	답	1,075	13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김*달					
50	남해	창선	광천	39	1	답	답	730	117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121번길	장*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해*대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건 지상권 1건		
51	남해	창선	광천	산41	1	임	임	12,694	3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박*수					
52	남해	창선	광천	79		답	답	195	8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김*찬					
계								50,734	11,160							

용 지 편 입 조 서(국유지)

번호	토 지 소 제 지		지 본	지 번	지 목		지 적 (m ²)	소 유 자		비 고
	면	리			대 장	현 재		주 소	성 명	
1	남해	창신	광천	1001		천	천	15,831	4,917	국토교통부
2	남해	창신	광천	1012		도	도	512	4	국토교통부
3	남해	창신	광천	산10	2	도	도	198	21	남해군
4	남해	창신	광천	산10	3	도	도	503	49	경상남도
5	남해	창신	광천	983	2	도	도	43	43	남해군
6	남해	창신	광천	983	3	도	도	140	140	경상남도
7	남해	창신	광천	983	4	도	도	21	21	경상남도
8	남해	창신	광천	1013		도	도	2,264	184	국토교통부
9	남해	창신	광천	912	2	도	도	447	447	경상남도
10	남해	창신	광천	911	3	도	도	198	198	경상남도
11	남해	창신	광천	910	3	도	도	148	65	경상남도
12	남해	창신	광천	909	4	도	도	13	13	경상남도
13	남해	창신	광천	902	6	도	도	508	9	경상남도
14	남해	창신	광천	902	3	도	도	972	106	남해군
15	남해	창신	광천	886	4	유	유	2,989	375	남해군
계									6,592	

남해군 공고 제2016 - 453호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주민감사 청구인 연서 수”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남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법규에 맞게 수정

현 행	개 정 안
200명 이상	150명 이상 200명 이하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 연락처 : 전화 055-860-3053, 팩스 860-3703, e-mail : bluesky60@korea.kr

의 건 제 출 서

1. 자 치 법 규 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 화 번 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9세이상 주민 200명 이상” 을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 200명 이하”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 ----- ----- -----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하 200명 이하-----.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1.>
-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14.>
-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

남해군 공고 제2016 - 461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6년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남 해 군 수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3.5>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등모천	등모소하천호안정비공사	남해군 이동면남음리 1632	남해군 이동면남음리 1632	L=885m H=1.5 ~4.0m	L=885m H=1.5 ~4.0m	진석쌓기 A=5,568.6 2㎡ 낙차공 7개소 하상보호 공 5개소 등	'16. 6.	'17. 6.	소하천 정비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등모소하천 시행계획

1. 소하천 공사의 명칭 : 등모소하천 호안정비공사
2. 사업목적 : 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예방 및 소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공사개요
 - 위 치 : 남해군 이동면 난음리 1632 일원
 - 사업량 : 호안정비 L=885m, B=6.5~8.4m
- 전석쌓기 A=5,568.62㎡, 낙차공 7개소, 하상보호공 5개소 등
 - 사업비 : 금1,166,000천원
4.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안전총괄과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공사기간 : 2016. 6. ~2017. 6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물건의 조서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 / 종류	면적 (㎡)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	
면	리							주소	성명
이동	난음	1631	국	구	1,317	12	100		국(농림축산식품부)
이동	난음	1632	국	구	22,814	9,795	100		국(농림축산식품부)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자 : 남해군수(안전총괄과장)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소하천정비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도 : 붙임 1
10. 실시설계도서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비치

남 해 군 공 보

(32) 제 561 호

2016년 6월 15일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단위 : 백만원)

소하 천명	2016년도 사업비				향후계획				비고
	총 사업비	국 비	도 비	군비	총 사업비	국 비	도 비	군비	
등모천	1,166	-	583	583	-	-	-	-	

12. 기타사항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5-860-3293)

붙임 1

위 치 도



남해군 공고 제2016 - 465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 지정(변경)하였기에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는 남해군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6년 6월 15일

남 해 군 수

1. 도로의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도로 구간		총연장	주요 경과 지	개발계획		지정(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남해	농어촌 도로	203	소로 2-72	소로 2-89	L=880m (A=13,665.8 m ²)	-	8	8	도로확포장 사업을 통해 도로의 협소함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136	•노선신설 B=8m, L=880m	•농어촌도로 남해203호선 개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교통시설:도로)으로 결정하고자 함

2)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36	8	국지 도로	880	소로2-72	소로2-89	일반 도로			농어촌도로 (남해203호선)

3.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남해읍 선소리, 차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 도로 - 남해203호선) 사업

○ 명칭 : 농어촌도로(남해읍203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 13,665.8㎡

○ 규모 : B=8m, L=880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명 : 남해군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의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사업의 준공 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실음생략(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명세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소유자		소유권의권리		비고
	군	읍	리	본번	부번		대장	편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계							91,793.9	13,665.8					
1	남해	남해	선소	14		구거	5,746.5	1,111.0		농림축산식품부			
2	남해	남해	선소	15		전	569.0	569.0	부산광역시 서구 ***	장○실			지분 76/569
									경남 남해군 서면 ***	허○일외1			
3	남해	남해	선소	16		전	418.0	55.0	부산 동래구 ***	박○기			
4	남해	남해	선소	17		답	1,894.0	153.0	경남 사천시 정동면 ***	강○진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시중구남대문로84 삼천포지점	
5	남해	남해	선소	18		답	903.0	147.0	경남 남해군 남해읍 ***	김○주			
6	남해	남해	선소	19		답	1,316.8	220.0	경남 남해군 남해읍 ***	김○주			
7	남해	남해	선소	20		답	647.0	96.0	경남 남해군 남해읍 ***	류○근	새남해농업협동조합	경남 남해군 고현면 탑동로 40	
8	남해	남해	선소	21		답	1,778.0	215.0	경남 사천시 정동면 ***	강○진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시중구남대문로84 삼천포지점	
9	남해	남해	선소	22		답	352.0	38.0	경남 남해군 남해읍 ***	이○춘			
10	남해	남해	선소	23		답	1,199.6	152.0	경남 남해군 남해읍 ***	이○춘			
11	남해	남해	선소	24		답	1,451.7	219.0	경남 통영시 ***	오○자			
12	남해	남해	선소	31	1	전	65.3	65.3		기획재정부			
13	남해	남해	선소	31	2	도로	704.4	54.0		국토교통부			
14	남해	남해	선소	31	4	전	3,602.0	970.0	서울 도봉구 ***	이○주	남해농업협동조합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100-9	
15	남해	남해	선소	31	5	전	4,465.0	544.0	서울 도봉구 ***	이○주	남해농업협동조합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100-9	
16	남해	남해	선소	31	7	전	1,646.0	307.0	서울 동작구 본동 ***	신○숙외4인			지 분 992/4117
									서울 양천구 목동 ***	정○영	양천세무서	지 분 995/4117	
											서울양천구청		
											보령시		
											서대문구청		
											시흥시		
											삼성세무서		
											영월군		
									이○자	서울시 서대문구 ***			
									박○순	서울시 송파구 ***			
서울 서대문구 ***	김○옥	영월군	지 분 981/4117										
		정○영	서울시 영등포구 ***										
		표○원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서울 도봉구 ***	이○주		지 분 654/4117										
서울 강남구 도곡동 ***	김○화		지 분 495/4117										
17	남해	남해	선소	31	11	제방	4,740.6	2,607.0		국토교통부			
18	남해	남해	선소	31	12	구거	5,875.3	260.0		국토교통부			
19	남해	남해	선소	31	13	제방	12,179.0	457.0		국토교통부			
20	남해	남해	선소	31	15	전	220.8	28.0		기획재정부			
21	남해	남해	선소	31	28	잡종지	646.0	33.0	서울 서초구 반포동 ***	김○균			
22	남해	남해	선소	31	30	잡종지	790.0	93.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이○용			
23	남해	남해	선소	31	31	잡종지	210.0	21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이○용			지 분 155/210
									서울 양천구 목동 ***	정○정	표○원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	지 분 55/210

남 해 군 공 보

(38) 제 561 호

2016년 6월 15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군	읍	리	본번	부번		대장	편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24	남해	남해	선소	31	32	전	495.0	96.0	서울 동작구 본동 ***	신○숙외4인			지 분 992/4117
									서울 양천구 목동 ***	정○영	양천세무서		지 분 995/4117
											보령시		
											서대문구청		
											시흥시		
											삼성세무서		
									서울 강남구				
영월군													
서울 서대문구 ***	김○옥	시흥시		지 분 981/4117									
		영월군											
		표○원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서울 도봉구 ***	이○주			지 분 654/4117									
서울 강남구 도곡동 ***	김○화			지 분 485/4117									
25	남해	남해	선소	31	33	전	1,976.0	161.0	서울 동작구 본동 ***	신○숙외4인			지 분 992/4117
									경남 남해군 남해읍 ***	김○표			지 분 995/4117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	김○옥	표○원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지 분 981/4117
									서울 도봉구 ***	이○주			지 분 654/4117
									서울 강남구 도곡동 ***	김○화			지 분 485/4117
26	남해	남해	선소	33	24	임야	2,028.1	67.0	경남 남해군 남해읍 ***	허○일	남해축산업협동조합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422-5	
											이○홍	경남 사천시 사천읍 ***	
27	남해	남해	선소	71		답	1,606.0	396.0	경남 남해군 남해읍 ***	이○춘			
28	남해	남해	선소	72		답	1,078.8	148.0	경남 남해군 남해읍 ***	장○엽			
29	남해	남해	선소	73		답	1,483.7	97.0	경남 남해군 남해읍 ***	이○숙			
30	남해	남해	선소	74		답	1,483.4	104.0	경남 진주시 평거동 ***	임○경외1	진주시부농업협동조합	경남 진주시 봉곡동 24-4	지 분 1/2
									경남 진주시 집현면 ***	이○경			지 분 1/2
31	남해	남해	선소	75		도로	2,261.4	1,613.0		농림축산식품부			
32	남해	남해	선소	77		답	1,186.0	3.0	경남 남해군 남해읍 ***	이○재			
33	남해	남해	선소	78		도로	541.0	49.0		농림축산식품부			
34	남해	남해	선소	79	1	답	3,239.0	3.0	경남 남해군 남해읍 ***	정○점			
35	남해	남해	선소	81	1	답	3,006.8	206.0	부산광역시 동구 ***	이○호			
36	남해	남해	선소	81	2	답	1,006.0	67.0	경남 남해군 남해읍 ***	정○례	민생무진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48-4	
											남해군 산림조합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72-2	
37	남해	남해	선소	81	3	답	1,990.9	136.0	부산광역시 금정구 ***	정○섭			
38	남해	남해	선소	81	4	답	3,024.0	208.0	경남 남해군 남해읍 ***	류○환			
39	남해	남해	선소	81	5	답	2,712.0	211.0	경남 남해군 남해읍 ***	박○배	남해축산업협동조합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422-5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남해군지부)	
40	남해	남해	선소	81	6	답	2,595.0	314.0	경남 합천군 가야면 ***	박○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군	읍	리	본번	부번		대장	편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41	남해	남해	선소	81	7	답	3,109.9	153.0	경남 남해군 남해읍 ***	박○일			
42	남해	남해	선소	82		도로	474.0	331.0		농림축산 식품부			
43	남해	남해	선소	88	2	도로	500.6	3.0		남해군			
44	남해	남해	선소	88	6	전	324.0	222.0	경남 남해군 남해읍 ***	김○태			
45	남해	남해	차산	30		전	403.0	259.0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	정○두			
46	남해	남해	차산	31	49	전	657.0	102.0		남해군			
47	남해	남해	차산	255	1	도로	3090.0	63.5		남해군			
48	남해	남해	차산	30	4	전	102.3	50		남해군			

남해군 공고 제2016 - 470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등 특정분야 미증원 인력에 대한 정원 조정
→ 2013년 지역현안인 CCTV 통합관제센터 1명 미증원분 증원
- 나. CCTV 통합관제센터 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정원 조정
- 다. 행정과 정원 조정
- 라. 읍면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 분야 확대

남 해 군 공 보

2016년 6월 15일

제 561 호 (41)

3. 주요내용

가. 총정원 조정 : 568명→569명(1명 증)

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

구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현행	568	282	13	104	25	18	126
개정	569	283	13	104	25	18	126
증감	증1	증1	-	-	-	-	-

다. 행정과 : 증 1명(방송통신 1명)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전화 : 055-860-3113, 팩스 : 055-860-3737)

- 붙임 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68명” 을 “569명” 으로, “각호외” 를 “각 호외”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55명” 을 “556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568명</u>으로 하되, 다음 각 <u>호와</u>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555명</u> 2.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569명</u> ----- 각 <u>호와</u> -----.</p> <p>1. ----- <u>556명</u> 2. (현행과 같음)</p>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계	569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543						
4급	1	1					
4~5급	3	2		1			
5급	31	11	3	1	4	2	10
6급이하 소계	507						
전문경력관	1						
별정직	1						
기록연구사	1						
농촌지도사	23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별표]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계급	직렬	총계	본정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계급	직렬	총계	본정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훈터									보건소	농업기술훈터			
계	합계	568	282	13	61	43	25	18	126	계	합계	569	283	13	61	43	25	18	126
	일반직	542	279	13	61	20	25	18	126		일반직	543	280	13	61	20	25	18	126
6급 합계		131	66	4	9	7	6	5	34	6급 합계		131	66	4	9	7	6	5	34
6급	행정	28	21	3			2	1	1	6급	행정	27	21	3			2	1	0
6급	행정+사회복지	6	5						1	6급	행정+사회복지	11	5						6
6급	행정+농업	15	4						11	6급	행정+농업	12	4						8
6급	행정+세무+농업	4						1	3	6급	행정+세무+농업	3					1	2	
6급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0	6급	행정+사회복지+보건	4	2						2
6급	행정+사회복지+농업	2							2	6급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6급	행정+농업+시설	8	1					1	6	6급	행정+농업+시설	7	1					1	5
8급 합계		135	76	2	14	5	8	4	26	8급 합계		136	77	2	14	5	8	4	26
8급	전산+방송통신	1	1							8급	전산+방송통신	2	2						

남해군 공고 제2016 - 473호

2016년 남해군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관리·운영 위수탁 현황 공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및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제8조(관리·운영 위·수탁)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남 해 군 수

□ 해수욕장별 관리 운영 위·수탁 현황

해수욕장명	위탁자	수탁자	이용안내
상주은모래비치	남해군	상주번영회	☎ 055-863-3573
송정솔바람해변	남해군	송정번영회	☎ 055-867-3414
두곡·월포해수욕장	남해군	두곡·월포 번영회	☎ 010-8835-8564 ☎ 010-8520-8287
사촌해수욕장	남해군	사촌번영회	☎ 010-2863-8684

□ 해수욕장 개장기간(시간)

해수욕장명	개장기간	개장일수	개장시간
상주은모래비치	2016. 7. 1 ~ 8. 21	52	09:00 ~ 19:00
송정솔바람해변	2016. 7. 8 ~ 8. 21	45	09:00 ~ 19:00
두곡·월포해수욕장	2016. 7. 14 ~ 8. 22	40	09:00 ~ 19:00
사촌해수욕장	2016. 7. 14 ~ 8. 22	40	09:00 ~ 19:00

알 림

남해군 미조면 공고 제2016 - 5호

미조면 소재 불법쓰레기 단속용 CCTV설치 행정예고

미조면지역 내 불법쓰레기 배출이 만연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단속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9일

남 해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불법쓰레기 배출 취약지역 내 사전 예방을 위한 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06. 09. ~ 2016. 06. 29. (21일간)

4. 공 고 방 법 :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남 해 군 공 보

(50) 제 561 호

2016년 6월 15일

5. 설치 예정지

구분	설치 장소		설치 대수	촬영 시간	비고
	위 치	세부 장소			
신설	남해군·미조면 1110-6,1034번지	송정리 송정솔바람비취 선착장 및 백사장 입구	2	24시간	

※ 설치 여건에 따라 인근 지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미조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중 택일

다. 제출기한 : 2016년 6월 29일까지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처 : 남해군 미조면 사무소

- 1) 주소 : (우) 52441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60
- 2) 전화 : 055-860-8233
- 3) FAX : 055-860-8249

[붙임]

의 건 제 출 서

사 업 명	미조면 쓰레기 불법 단속용 CCTV 설치		
의 건 제 출 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6 - 14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이동면 원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남 해 군 수

- 1. 공공하수도 명칭 : 원천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 2. 사용개시일 : 2016년 6월 1일
- 3. 하수처리구역
 - 편입지역 : 이동면 신전리 원천마을 1개마을
 - 편입면적 : 0.0831km²
 - 관로연장 : 2.7km
- 4. 하수처리시설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103번지 외 1필지
- 5. 설계수질 및 설계 유입 용량

○ 설계수질 (단위:mg/ℓ)

구 분	BOD	COD	SS	T-N	T-P
유입수질	206.0	172.0	252.0	47.0	8.0

○ 설계 유입 용량 : 150m³/일

- 6. 하수배제방식 : 분류식
- 7. 관련도면 열람
 - 공람기간 :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 하수처리구역도 공람장소 :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55-860-3334)

원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Scale=1: 6,000



기 존 시 설 개 요

처 리 인 구	241 인
가 구 수	106 가구
처 리 구 역	8.31 ha
계 획 하 수 량	150 m ³ /일
시 설 용 량	150 m ³ /일
관 로 연 장	2,111 m
펌 프 장	4 개소

번 려

구 분	명 칭
—xxx—	처 리 분 구
⊠	처 리 장
⊙	맨 홀 펌 프 장
→	오 수 관 로 (자 연)
→	오 수 관 로 (압 송)